

##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예원예술대학교(이하“예원예술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직제)**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직제는 각각의 심의 기구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직제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부속·부설기관은 이사장승인으로 같음한다.

**제4조(위임 직제 및 직능)** ① 정관 제26조 제1항에 규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무분장 등)** 법인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교원의 임면)** ① 정관 제26조 제2항 제5호의 단서에 의하여 예원예술대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간강사 및 조교는 교학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② 예원예술대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일반직원의 임면)** ①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예원예술대학교의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②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일반직원 임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직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의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 임용하여야 하며 신규임용계획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 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년)**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 교직원의 정년은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확보에 앞서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예원예술대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제10조 기본재산의 취득 이외의 다음 사항도 시행 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교육용 실험 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설폐에 관한 사항
5. 교육용 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제1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예원예술대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의한다.

**제13조(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6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확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예원예술대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3조의 절차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① 이사장과 예원예술대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공고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과 학교회계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이 밖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34조에 준한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각 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상태를 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사장 및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각종 규정 및 규칙)** ① 교육관계 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심의기구를 거쳐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다.

②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 보수, 신분보장, 징계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각각의 심의기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8조(제 위원회)** ① 제위원회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징계위원회
2. 일반직원징계위원회(재심위원회포함)
3. 정책자문위원회

② 전조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각각 설치기관에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포상)** ①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원예술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익사업)** 정관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중 제2호 기타수익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② 영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③ 전시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④ 교육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 ⑤ 이 밖의 공익적, 교육적 관련 일체의 사업
- ⑥ 타인으로부터 혐오스러운 사업 및 사행성사업, 주점관련 사업은 할 수 없다.

부 칙(2001. 2. 28)

1. (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2. 12. 23)

1. (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시행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예원예술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